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25 선고 2022가단60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859,371원 및 그 중 2,709,371원에 대하여 2021.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2노2524호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B의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초한 추징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제2항 기재 확정판결(2012. 10. 19. 확정)에 기한 추징금 채무 51,700,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5. 9. 8.경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로 압류절차(이하 '선행 압류'라 한다)를 진행하여 그로 인한 강제집행절차가 2015. 9. 14. 완료되었다.

피고는 그 이후 2018. 6. 29.경 위 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33229호로 원고의 D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명령이 2018. 7. 4. D은행에 송달되었으나, 원고의 D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2013. 1. 16. 완성된 채권이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에 기하여서는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채권소멸시효의 중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의 소멸시효는 선행 압류가 종료한 다음날인 2015. 9. 15.부터 새로이 다시 진행하여 2018. 9. 14. 완성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명령은 무효이기에 그에 따른 채권소멸시효의 중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1. 6. 28. 원고의 E조합 F지점에 대한 예금 채권을 압류하여 2021. 7. 1. 2,809,301원을 징수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2,809,301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책임이 있어 이를 청구하고, 또한, 이 사건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더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추징형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을 준용하여 집행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추징형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형법 제80조).

추징형의 집행을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추징을 집행하는 경우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강제처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추징형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집행행위가 종료되거나 성공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당해 집행행위의 개시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하지도 아니하고, 채권압류가 집행된 후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응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이상 피압류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잉여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집행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행위의 개시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검사의 징수명령에 의해 수형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경우, 비록 그 예금채권이 사실상 휴면예금이거나 액수가 극히 적은 금액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5.자 2008모1396 결정, 대법원 2023. 2. 23.자 2021모3227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그 시효는 구 형법(2017. 12. 12. 법률 제15163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 제6호에 의하여 3년이라 할 것이다.

원고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는 재판이 2012. 10. 19. 확정된 후로부터 기산하여 그 시효인 3년이 지나기 전인 2015. 9. 8. 강제처분인 피고의 선행 압류가 개시되어 그 시효가 중단되었고, 위 선행 압류 절차가 종료하여 중단 사유가 종료한 2015. 9. 15.경부터 다시 그 시효가 진행되었으나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피고가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29.경 다시금 강제처분인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압류명령이 이루어진 이상 그러한 집행행위의 개시, 즉, 이 사건 압류명령의 신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시효는 그 무렵 다시 중단되었다고 판단된다.

비록 이 사건 압류명령의 대상인 예금채권이 상사시효가 경과한 휴면예금이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강제처분의 개시(압류의 신청)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 다시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여 2021. 6. 28. 압류명령이 이루어져 그에 따라 원고의 재산(예금 채권)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그 무렵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시효는 다시 중단되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신영